

# 제940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- 심 사 일 : 2013. 10. 17.
- 사업개요
  - 용역비 : 700,000천원
  - 용역기간 : 2014. 1 ~ 2014. 8월
  - 용역규모 :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설치 계획 등
-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<b>1. 용역의 필요성</b>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요성 인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의 미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전문업체 용역 필요함.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color: blue; font-size: small;">알림: 주요공종이 자체설계 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</p>
<b>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</b>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비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액 : 700,000천원</li> <li>- 심사액 : 360,712천원(감 339,288천원)</li> <li>· 사업비 산출항목 수정 및 통합, 중복항목 제외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장서관리 등에 철저를 가하기 바람.</li> </ul>
<b>3. 조건부여 이행확인사항</b> - 용역성과품 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, 심의절차 이행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, 첨부된 &lt;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사항&gt;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하기 바람.</li> </ul>
<b>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”과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범위 및 용역비 산정 등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.</li> <li>○ 과업내용서는 설계용역관리편람(공통편) 작성기준 참고 하여 보완 작성하기 바람.</li> </ul>
<b>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</b>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하기 바람</li> </ul>

<첨 부>

##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 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 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</u>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○ <u>발주부서</u>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<u>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 - 단, <u>서울시</u>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 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
심사 및 심의전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○ 기술용역타당성 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심의 <u>요청 전 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 - <u>사업계획 수립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·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<u>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</u>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<u>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</u>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○ <u>발주부서</u>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 <a href="http://www.gov20.seoul.go.kr">http://www.gov20.seoul.go.kr</a> 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 <u>준공시</u> ) -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 <u>준공시</u> 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<u>시장방침 제1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</u>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 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( <a href="http://98.33.0.64/gis/index">http://98.33.0.64/gis/index</a> 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해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<u>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u>